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남부건설사업소 종합감사 -

2021. 12.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권고	회수		감액		추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4	2	0	1	92	2	35,322	0	0
1	☐ ☐ ☐	연가보상비 부당수령 및 복무 부적정	1			1	92				
2	☐ ☐ ☐ ☐ ☐	지출 증빙서류 미비		1							
3	☐ ☐ ☐	수입증지 요금계기 운영 부적정	1								
4	☐ ☐ ☐ ☐ ☐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1							
5	☐ ☐ ☐	도로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1					1	2,184		
6	☐ ☐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1					1	33,138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보상비 부담수령 및 복무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50조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3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1. 공가(건강검진) 부정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담 수령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에 근무하는 □□□(□□□)는 [표1] 과 같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은 후, 개인사유로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상기 공가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보상 연가사용 일 수에 산입하지 않고 연가보상비 총92,400원을 부담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공가 관련 연가보상비 부담 수령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가일(요일)	실제 검진일(요일)	환수대상 금액	비고
계			1명				92,400	
1	□□□	□□□	□□□	1963.05.15.	2019.10.30.(수)	2019.5.25.(토)	92,400	공가일 건강검진 미실시

2. 공가 복무 부적정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에 근무하는 □□□외 1명은 [표2] 과 같이 사전에 연가 등 사용에 대한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구두보고로 갈음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2] 공가 관련 복무 부적정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건강검진일	복무내역	비고
계			2명				
1	□□□	□□□			2019.12.04.(수)	없음	
2	□□□	□□□			2019.05.30.(목)	없음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 ① 부담 수령한 연가보상비 92,400원은 회수하시고,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출 증빙서류 미비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 □□□□□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4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 와 같이 2018. 9. 27.부터 2020. 1. 23.까지 선물구입, 식사제공 등 50만 원 이상의 5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증빙서류로써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해당부서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미비내용
1	□□□	2020.01.2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59,540	50만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한 명단 미 첨부
2	□□□	2019.09.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32,940	
3	□□□	2019.02.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11,840	
4	□□□	2018.09.2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5,920	
5	□□□□□	2019.12.2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0,000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수입증지 요금계기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등 부과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 1대를 관리 및 사용하고 있다.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계기의 사용) 제4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남부건설사업소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등 변경된 사항을 도보에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부건설사업소는 2017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남부건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등 변경사항에 대해 고시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2009년 2월 19일 종합건설사업소 명의로 고시 후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표] 수입증지 요금계기 고시 현황

고시일 (고시번호)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비고
2009.2.19. (제2009-101호)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	종합건설사업소 □□□장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장은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를 준수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련 변경사항을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편성된 공공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지급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2 공공운영비(201-02)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연료비 및 차량·선박 유지를 위한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 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공공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연료비 및 차량·선박 유지 등 용도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부건설사업소는 [표]와 같이 블랙박스·네비게이션·고압용 공기압축기·진동롤러 및 굴삭기 작업기 구입과 품질시험용 선반·긴급자동차 경광등 및 품질시험용 후드 설치 등 총 13건(31,597천원)을 집행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는 시설비 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다.

[표] 공공운영비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개, 원)

품의일자 (집행일자)	품 명	품의금액	집행금액	비고
합 계	13건	33,922,000	31,597,350	
2019.09.27. (2019.10.24.)	품질시험용 선반	2,453,000	2,330,350	
2019.11.28. (2019.11.21.)	굴삭기 작업기 등	4,270,000	2,270,000	타이어 제외
2019.12.09. (2019.12.27.)	시험장비대	6,100,000	6,083,000	
2020.01.13. (2020.01.15.)	경광등 등	1,430,000	1,430,000	
2020.01.21. (2020.01.23.)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600,000	600,000	
2020.02.04. (2020.02.07.)	품질시험용 후드 등	4,136,000	4,136,000	
2020.04.17. (2020.04.24.)	경광등 등	1,320,000	1,320,000	
2020.05.07. (2020.06.10.)	진동롤러(아스팔트 다짐기)	5,643,000	5,643,000	
2020.05.19. (2020.05.26.)	굴삭기 웨이트	3,800,000	3,685,000	
2021.01.12. (2021.01.21.)	품질시험용 선반 등	2,860,000	2,860,000	
2021.02.23. (2021.03.10.)	고압용 공기압축기	1,980,000	1,980,000	
2021.07.22. (2021.07.29.)	네비게이션	370,000	330,000	
2021.08.19. (2021.09.03.)	블랙박스	280,000	250,000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 공공운영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도로건설사업으로 [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사·군	읍·면						
□□□소재지 도로건설공사			도로확·포장 L=1.18km B=9.5~21.5m	2,292	2019.07.08	2019.07.15.~ 2022.08.31.		48%
□□~□□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24km 교량2개소	4,271	2018.06.12.	2018.06.22.~ 2022.10.10.		63%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 미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착공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소재지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 49조 및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같은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일치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소재지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차도 경계석 설치 시 콘크리트양생 및 습기차단을 위한 비닐깔기를 미시공 하였으며, 모르타르 시공품이 중복되어 있음에도 844천원(제경비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측구설치(V형,U형) 레미콘타설을 장비타설(굴삭기)로 설계에 계상하였으나, 현장여건 상 경제적인 펌프카를 이용해 붐타설을 실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실정보고 및 1,340천원(제경비포함)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2,184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표1],[표2]와 같이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시·군	읍·면						
□□□(□□□□) 하천재해예방사업			축제및호안 L=3.47km 교량 5개소	6,308	2019.09.10.	2019.09.16.~ 2022.11.02.		59%
□□□(□□□□) 하천재해예방사업			축제및호안 L=2.4km 교량 5개소	5,120	2020.02.26.	2020.03.03.~ 2024.03.03		50%

[표2]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관리지구	위 치		용역비	계약일	용역기간	도급자	비고
		시·군	읍·면					
□□□(□□□□)하천 재해예방사업 외 3개 지구 건설사업관리 용역	□□□□			1,860	2020.03.13.	2020.03.13.~ 2024.03.15.		
	□□□□							
	□□□□							
	□□□□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표3] 각 사업현장 간 직선거리표와 같이 □□□□□ 하천재해예방사업과 □□□□□ 하천재해예방사업 간의 직선거리가 최대 76.8km 되는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없다.

[표3]사업현장 간 직선거리표

(단위 : km)

구 분	□□□□□ 하천재해예방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	비 고
□□□□□ 하천재해예방사업	-	75.5	76.8	51.2	
□□□□□ 하천재해예방사업	75.5	-	1.7	69.5	
□□□□□ 하천재해예방사업	76.8	1.7	-	69.8	
□□□ 하천재해예방사업	51.2	69.5	69.8	-	

그런데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업장간 직선거리가 20km이상에 해당 되어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이 불가능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2.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 49조 및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같은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일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및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조물공, 교량공에 사용된 철근 505.87톤 중 79.96톤은 가공없이 조립품만 적용해야 하나 가공 및 조립품 모두를 적용하여 총금액 25,185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하고도 공사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또한, □□□(□□□□) 하천재해예방사업 경우 공사 지구별 연장, 토공 유동량과 사업계획에 따른 운반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축중기 설치횟수를 조정(12회→9회)하지 않았으며 과다계상된 7,953천원(제경비포함)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33,138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